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4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5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파산절차와 관련된 결격 사유를 일괄적으로 삭제·정비 (박홍근의원안)	2

I. 개요

1.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5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파산절차와 관련된 결격 사유를 일괄적으로 삭제·정비 (박홍근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관세법」 제17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미성년자 등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관세사 결격사유 (「관세사법」 제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세무사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면허 제한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관세사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세무사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주류 면허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현행	개정안
	날부터 시행

* 박홍근의원안 2024. 9. 12. 발의(의안번호 3954)

□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¹⁾ 운영인 등²⁾의 결격사유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의 결격사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 면허법」’)의 면허 제한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관세법」 등 총 4건의 법률³⁾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1)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정한 구역을 말함. 이 중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명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정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하며,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됨.

2) 참고로, 현행 「관세법」은 보세사, 보세운송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 자격 전반에 대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니한 자를 각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결격사유, 관세사·세무사의 결격사유 및 주류 면허 등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대표적인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으며, 이 중 파산선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한 파산선고를 의미함.

다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⁵⁾ 파산절차 중에 그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이는 개인이 파산절차를 활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활용하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⁶⁾에 준하여 도입된 것임.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법률들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직위나 영업, 자격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주류면허법」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이하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7)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2552) 검토보고」, 2쪽

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동 결격사유등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일 소지가 있음.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직위나 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본래 취지인 경제적 효율성의 도모⁸⁾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파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기존의 직위나 새로운 경제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들은 이러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음.

다만, 세무사나 관세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역할의 전문성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대체로 해당 직위나 영업, 자격의 공익성을 이유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세무사는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으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 소정의 경제적 능력을 요하므로,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게 위임인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세무사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관세법」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관세사 및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역할의 공공성·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수출입물품 과세가격 확인·세액 계산·관세 관련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여 그 역할이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관세법상 신고 승인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하고, 보세화물의 도난·분실시 납세의무 및 화주에 대한 화물 인도·배상 책임을 지는 등 통상적인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요하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주류면허자 역시 경제적 능력 및 납세협력 의무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제한사유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⁹⁾

문 의 처
02)6788-5158

9)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등을 감안하여, 세무사·관세사 시험은 응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는 있되, 파산선고 이후 세무사·관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